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 9. 3.)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화승호]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5 ~ 58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015 ~ 60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6
2015 ~ 61	거창군 기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5 ~ 62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시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2015 ~ 6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5 ~ 64	거청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3
2015 ~ 65	거청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동의안	30

의안번호 제2015 - 58호

_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5. 8. 19.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8. 19.

2.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삭제하는 등 조례 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1조제3항)

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출서류 삭제(안 제 13조제1항)

O 삭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삭제(안 제13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5. 8. 1. ~ 8.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15. 6. 4.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 조의3 제4항에 의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 이 취소된 경우와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취소요청 이 있는 경우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 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 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 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 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u>지정 취</u>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12.31., 타법개정]

-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 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마. 업종의 구성
-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 재무구조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 가. 요약문
 -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 의 종류, 매장면적(m²)
 -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사. 상권영향기술서
-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 ⑤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 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 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 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 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번호 제2015 - 60호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5. 8. 19.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8. 19.

2. 개정이유

- O 점용료 부과 금액이 5,000원 미만인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혜택 제공
- O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납부 후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 부과를 해소

3. 주요내용

- 가. 5,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 나.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반환할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삭제(안 제4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5. 8. 1. ~ 2015. 8.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용료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O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 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u>군수는</u>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u>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u>.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u>지</u>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번호 제2015 - 61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5. 8. 19.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8. 19.

2. 개정이유

O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조례 시행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제4항)

- 나.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의 증축 시 인근주민의 60% 이 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5호)
- 다. 인용 법 조문 및 조례명을 수정함(안 제6조, 제7조, 별표 1)
 -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시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O 법 제24조 ⇒ 법 제25조
 - O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2조 ⇒ 제12조, 제3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삭제(안 제4조제2항제5호)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5. 8. 1. ~2015. 8.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 ·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 변경·변경근거,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 O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 적 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

의한 경우를 삭제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O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3.25.] [법률 제12516호, 2014.3.24., 일부개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자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시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u>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u>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번호 제2015 - 62호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5. 8. 19.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8. 19.

2.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에 농업인 등이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O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 퍼센트 이상 사용하고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 나.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조항 삭제(안 제7조)
 - O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완공에 맞춰 개별조례 제정
- 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특례 신설(안 제7조, 별표)
 - O 건축물 위치, 구조, 작업장,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 특례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1호자목4)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등(안 제3조·제5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별표 14 제1호자목4)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민원봉사과(위생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완화(안 제7조, 별표)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5. 8. 1. ~2015. 8.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농업인 등이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가 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O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등은 별표의 기준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7조 1항 및 2항을 신설하였음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다)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 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

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려는 경우
 -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 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 ·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 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 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 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u>군수</u>·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의안번호 제2015 - 63호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5. 8. 19.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8. 19.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과 및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 나.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안 제17조제2호)
 - O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신고량
 - ⇒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안 제23조)
 - 제반 ⇒ 모든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27조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삭제(안 제3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5. 8. 1. ~ 2015. 8.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과 및 과도한 규제규정인 개정조례 제3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 O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내용을 수정(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하였음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 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하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 비의 유지·관리 공사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5.1.6.] [법률 제12990호, 2015.1.6., 일부개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2013.5.22.>

-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 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30.>
- ⑤ 삭제 <2011.5.30.>
-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⑦ 삭제 <2013.5.22.>
-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 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u>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u>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번호 제2015 - 64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5. 8. 19.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5. 8. 19.

2. 제안이유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O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
 - 주민공동이용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
-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
- 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 도서관, 농업박물관
- O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 O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 O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함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수도법」제7조, 「수도법 시행령」제13조, 「상수원관리규 칙」제12조
- 나. 예산조치: 2015년도 예산 1,571백만원 기 확보(건설과)
-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건설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5. 6. 15. ~ 7.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 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 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건축물 및 시설물 조성 등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
 - 1. 도서관, 농업박물관 /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 4.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국비	477	625	1100	700	598	3,500
	도비	61	80	141	90	78	450
	군비	143	188	330	210	179	1,050
	소계(a)	681	893	1,571	1,000	855	5,000
세입	국비	477	625	1100	700	598	3,500
	도비	61	80	141	90	78	450
	소계(b)	538	705	1,241	790	676	3,950
총 비 용(a-b)		143	188	330	210	179	1,050

※ 건설과 권역단위정비사업에 예산 편성 및 집행

3. 관련 의견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 장치를 마련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경 기

6. 참고자료: 관련법령

□「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 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 2014.11.28., 일부개정]

-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 의 철거 및 인근 마을로의 이전
-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 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 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3. 소득기반시설: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가. 잠실(蠶室):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 나. 버섯재배사(버섯재배사):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 곱미터 이하
 - 다. 생산물저장창고: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라. 담배건조실: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 바. 기자재보관창고: 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

- 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 사. 관리용 건축물: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아. 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u>주민공동이용시설</u>: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나. 유치워. 경로당
 - 다. 마을회관
 -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 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 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 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

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2) 마을회관, 경로당
-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 나. 공익시설 · 공동시설과 공공시설
 -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 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7.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 시설 또는 자연장지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5. 8. 19.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8. 8. 19.

2. 개정이유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15.12.31) 됨에 따라
- 2016. 1. 1 ~ 2018. 12. 31(3년간)까지 학교급식자재 조달대 행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현 황

- O 시 설 명: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 O 위 치: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 O 규 모: 연면적 1,345 m² (지상2층)
 - 1층(1,054 m²): 입하장, 냉장·냉동 창고, 소포장실, 출하장 등
 - 2층(291 m²): 사무실, 회의실, 식당, 탈의실 등

나. 위탁사무

- O 시 설: 학교급식지원센터 1, 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
- 운 영: 유·초·중·고 38개교 등(10,000여명) 식재료 조달대행 업무

다. 그간의 추진사항

- O 2010. 1.: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도 지원사업 선정
- 2011. 10.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O 2011. 11. :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
- O 2012. 4.: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동의(안) 가결
- O 2012. 4.: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선 정/거창원협
- O 2012. 5. : 23개교/4,025명 식자재 조달대행/초등
- O 2012. 9.: 36개교 식자재 조달대행/중·고등 추가
- 2013. 10. : 38개교/10,000여명 식자재 조달대행/유치원 추가
- 2015. 1.1 ~ 2015. 12. 31 : 학교급식지원센터 재 위탁/ 거창원협

라. 운영계획

- O 위탁 운영
 - 수탁기관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 단, 2015년 9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추진

O 위탁운영 방식

- 급식대상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납품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유지관리, 인력 및 배송을 포함한 급 식지원센터 운영일체
- 공급품목의 가격, 생산 공급업체 선정, 이익금의 분배조건 등은 현행대로 하며 변경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대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등 실 무일체 위탁

마.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 O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O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O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조달대행 수탁기 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2015.12.31)에 따라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르면 "군수가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O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 O 이에 앞서 민간위탁시의 문제점 분석과 경영수지 분석 등 종합 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참고자료: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6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 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시행일: 2011.10.04)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거창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결정
 - 3.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의 협약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 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 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배농가 · 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 2.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 3.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 4. 위원회, 거창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 4. 생산단지 조성과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 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 ⑥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연락처: 055-940-3170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